

의안번호	제 89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6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최경천, 박성원,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괄부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 체계 명확화(안 제12조)

(현행)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 회의에 회부

다. 정책연구용역 계약정보 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

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규정 강화(안 제17조)

(현행)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

(변경)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가 1명 이상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최종보고회 개최하여 평가

마.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6.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회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제1항 중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 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총괄부서”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을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다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활용방안과” 를 “활용방안 및” 으로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사업명과 목적
2.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3. 정책연구용역 기간과 방법
4. 정책연구용역 비용 및 계약 방식과 그 이유
5.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
6.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계약정보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 기관명
2. 책임연구원
3. 계약방식, 계약금액 및 계약일자

제15조(중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연구용역 연구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를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 예산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 예산안 심사 7일 전까지 제5조제1호의 심의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0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u></p> <p>5. <u>“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u></p> <p>6. <u>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u></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 ----- -----</p>

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②

(생략)

<신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 ① -----

--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총괄부서

1. 정책연구용역 사업명과 목적

2.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3. 정책연구용역 기간과 방법

4. 정책연구용역 비용 및 계약 방식과 그 이유

5.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

6.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6. (생략)

<신설>

제14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생략)

<신설>

제15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4. ----- 활용방안 및 -----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4조(계약정보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 기관명
2. 책임연구원
3. 계약방식, 계약금액 및 계약일자

제15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

----- . <단서 삭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 ① -----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19조 (생략)

<신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1조(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 예산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 예산안 심사 7일 전까지 제5조제1호의 심의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

정한다.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영 제51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삭제 <2017. 10. 17.>

2. 삭제 <2017. 10. 17.>

3. 삭제 <2017. 10. 17.>

4. 삭제 <2017. 10. 17.>

5. 삭제 <2017. 10. 17.>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39조(연구과제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과제담당관 등) ①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 제5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 영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영 제52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1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